

대법원 2018도7031

전 국회의원 최민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8. 7. 26. 전 국회의원 최민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시장실을 비롯한 10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한 행위가 호별방문금지 위반, 당선 목적 허위 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031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임
- 피고인은 2016. 1. 14.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 남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민희'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제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홍보기획과를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최민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음
- 피고인은 2016. 4. 5.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주광덕 후보로부터 고발당하자, 2016. 4. 11.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기자들과 피고인이 출마한 남양주 병 선거구의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조안IC 설치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고, 남경필 지사는 '3개시 모두 할 예정인데 남양주가 최적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이 방문한 남양주시청 각 사무실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의견표명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및 사실의 적시라면 허위사실인지

■ 원심의 판단

- 호별방문금지, 후보자 토론회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유죄(벌금 150만 원)
 - 피고인이 방문한 남양주시청 각 사무실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함
 -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조안IC 신설에 관한 발언은 공약의 제시나 의견의 표명에 붙어 있는 부수적인 계획 등에 관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인 피고인의 위 각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때까지 진행된 경과 등에 관한 독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진실과 약간 차이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

나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

-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 무죄(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내용이 다름)
-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부분은 남경필의 최우선 '고려'에 대한 의지를 '약속'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의 표명,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후보지 선정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6. 7.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의 적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의 적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조안IC 부분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안IC를 국비로 설치해 달라고 촉구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2. 대법원의 판단

- ▣ 판결 결과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기각
- 원심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수긍함

3. 판결의 의의

- ▣ 관공서 사무실이 호별방문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함

- 다만, 최근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호별방문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

- ▣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견표명과 사실의 적시의 구별,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함

- ▣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공무담임권, 선거권 등이 제한됨